

서울식물원 연간회원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을 이용하는 연간회원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서울식물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연간회원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서울식물원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서울식물원이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에 동의한 경우 연간회원권을 구매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따릅니다.

(제2조) 적용 대상 및 연간회원권자의 정의

서울식물원 연간회원권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연간회원권에 가입한 후 자격을 획득하여 연간회원권증을 소지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연간회원권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 연간회원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서울식물원이 제공하는 가입신청서에 연간회원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서울식물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후 서울식물원으로부터 연간회원권증을 발급받으면 연간회원권자로 가입됩니다.
- 서울식물원이 연간회원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서울식물원 연간회원권 가입신청을 승낙할 경우, 서울식물원은 그 이용자에게 연간회원권 가입 신청서(신청서 뒷면 약관 포함)를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이후 그 희망자가 약관에 대해 가입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하면 서울식물원은 연간회원증(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포함)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연간회원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서울식물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식물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서울식물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서울식물원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제4조) 연간회원권자의 권리

-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 가입일로부터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 동안 가입한 연간회원권의 종류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회원권의 종류 및 그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합니다.
- 서울식물원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연간회원권의 종류 및 그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및 모바일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연간회원권자의 의무

- 연간회원권자는 이용 시 반드시 연간회원권증을 지참해야 하며, 요구 시 연간회원권증을 제시하여야만 연간회원권자로서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회원권증을 분실, 훼손 또는 미 지참한 경우에는 연간회원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간회원권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증을 서울식물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양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

-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은 연간회원권자가 가입 시 지정 및 안내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으로 이는 연간회원권증에 기재됩니다.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증 발급 후 즉시 유효기간이 연간회원권자의 가입의도에 맞게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울식물원의 과실로 유효기간이 가입신청서와 달리 잘못 지정된 경우 서울식물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급 비용은 서울식물원이 부담합니다.

-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또는 병원 입원 및 그 후유 장애 치료,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테러 또는 재난 등 일정 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 서류로 증명 가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기간은 합리적으로 방문 불가능한 날짜만을 고려하며 반드시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서울식물원에 제출하여 승인 후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간회원권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2항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연간회원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면 연간회원권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2호~4호의 경우 연간회원권증은 즉시 회수되며, 회수된 연간회원권증의 환불 및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식물원은 손해의 책임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연간회원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연간회원권증을 무단으로 대여, 양도, 매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연간회원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울식물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연간회원권자가 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서울식물원이 고용한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 다른 이용객에게 물리적, 심리적 위해를 주어 관람 및 이용에 방해를 주는 경우 등 서울식물원 방문 및 혜택에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연간회원권의 환불 및 양도

- 연간회원권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연간회원권의 환불 및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결제 당일 철회 요청 시 연회비를 환불하고, 이용가격은 별도로 받습니다.
- 환불 시 연간회원권증은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8조) 연간회원권증의 분실 신고

- 연간회원권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연간회원권자는 즉시 서울식물원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간회원권증 분실신고 이전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연간회원권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연간회원권증의 재발급

- 연간회원권증을 재발급 받을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합니다.
- 부정사용으로 인해 회수된 연간회원권증은 재발급 할 수 없습니다.
-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연간회원권증을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10조) 불가항력

-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구제,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회원권 혜택 제공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하여 서울식물원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 제1항이 사유로 연간회원권 혜택 제공이 어려울 경우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식물원은 제7조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단, 이 경우 연간회원권자는 본 약관에 따른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 본 약관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식물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연간회원권자에게 고지해드립니다.
 - SMS 문자 발송
 - 온라인 및 모바일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내 게시
- 본 약관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법 규정 및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릅니다.